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14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김미애 · 서명옥 · 정성국
이성권 · 박수영 · 김도읍
곽규택 · 박성훈 · 서지영
조승환 · 김대식 · 백종헌
고동진 · 정연욱 · 이소희
한지아 · 김희정 · 김예지
이종배 · 주진우 · 정동만
박대출 · 이상휘 · 조배숙
김형동 · 한기호 · 이현승
조경태 · 조지연 · 이양수
강대식 · 윤상현 · 안철수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게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 지시 배제 등) ①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의원은 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보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보좌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보좌직원의 보호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받은 보좌직원은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⑥ 의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신고를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장(제17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장 벌칙

제170조(벌칙)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또는 신청·신고를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 지시 배제 등) ①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u> <u>② 의원은 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의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보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보좌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u> <u>④ 사무총장은 보좌직원의 보호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 <u>⑤ 제3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받은 보좌직원은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u>

<u><신 설></u> <u><신 설></u>	<u>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u> <u>⑥ 의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신고로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u>제17장 벌칙</u> <u>제170조(벌칙)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또는 신청·신고를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